

瑞山市規制改革委員會設置 및 運營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1999. 2. 19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9. 2. 19

라. 上程日字 : 1998. 2. 26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企劃監查擔當官 金知榮)

가. 提案理由

- 시민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규제의 심사 및 정비의 종합적인 추진등 규제개혁에 대한 심사·조정 자문기구로써,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규제의 정비와 등록, 공표, 규제의 신설·강화와 규제개혁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심의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고,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함.
-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다변화된 경쟁정보사회에서 주민과 기업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정비하여,
-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제정 취지는 시대의 조류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 조례의 상위법인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심사기구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조례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장 2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 위원장을 2명으로 하는 공동위원장을 둘 경우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방안이 요구됨.
- 부칙 제2항에 기존 『서산시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위원이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 조항은 조례안 제3조에 의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있고, 제정조례의 취지상 부칙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질의1) - 본 조례가 제정된 것은 다소 늦은점은 있으나 다행스러운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위원장을 2명으로 두는 이유는?
 답변) -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주도로 되어야 하나 아직 성숙도가 미흡할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을 하려고 해도 행정에 대한 경험이 미흡하므로 공무원이 참여하여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사료됨
- 질의2)- 위원(민간인)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를 위촉해야 하는데 부칙2호에 의하면 “서산시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 위원을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답변) - 현재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98년 5월에 구성되어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다시 구성되는 위원보다 운영상으로 볼때 문제점보다는 오히려 효율성이 높다고 사료됨.

5. 討 論

⇒ 부칙2호(경과조치)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少數意見 : 없었음.

7. 審查結果 : 수정안 대로 가결

8. 添 附 : 위원회 수정 동의안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9. 2. 26

제안자 : 총무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서산시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위원”을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은 조례안 제3조에 의거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명시할 필요성이 없음.

2. 수정주요골자

부칙 제2호(경과조치)를 삭제함.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부칙 제2호(경과조치)를 삭제한다.

수정안대비표

| 원안 | 수정안 |
|---|---------------------------------|
| 부칙 ①(시행일) 생략 ②(경과조치)기존“서산시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위원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서산시규제개혁위원으로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 | 부칙 ①(시행일)원안과 같음 ②(경과조치)삭제 |

| | |
|-------|--------------------|
| 의안번호 | 제 47 호 |
| 의결년월일 | 1999. . . (제 회) |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 |
|-------|---------------|
|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 제출년월일 | 1999. 2. 19 . |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 제정이유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의 등록·공표,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조정 자문 기구인 서산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등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넘어야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자로 시장이 위촉하는자(안제3조).

다.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 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자가 직무대행(안제4조).

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안제5조).

마.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 설치(안제7조).

3. 참고사항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종합지침통보 (도 법무11250 - 159(98. 9. 21))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 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

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 및 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기존 “서산시행정규제개혁대책협의회”의 위원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및 임명된 것으로 본다